

우리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복지관 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9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직급	분야	인원	주요업무
정규직	팀원 (4급)	일반직	1명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사업 '오늘, 우리' 운영 ·성인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제공 ·개인별서비스계획수립 및 평가 ·이용자 및 보호자 상담
	팀원 (4급)	재활전문직	1명	·이용자 기능향상을 위한 개별치료(언어, 심리,작업 등) 서비스 ·그룹치료(언어,심리,인지 등) 서비스 ·부모(보호자)상담 및 정보제공 ·장애가족 및 비장애형제 프로그램
기간제	팀원 (4급)	일반직	1명	·대기자 상담 ·개인별 서비스 계획서 수립 ·서비스 과정 평가 ·사후 지원 ·청년 발달장애인 자립 대학 과정 '우리 대학' 운영
채용인원			3명	

- 채용분야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탈락 처리
- 채용 후 부서 배치 및 업무는 조정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임용일~2025.06.02.

2. 응시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가. 공통요건

- 만 19세 이상인 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었던 기간 (말소 및 거주 불명기간 제외)이 총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단, 재활전문직 4급은 거주지 제한 제외
- 성별제한 : 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구분	결격사유	비고
우리복지관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자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상기 조항에 위배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서 그 경력기간내 직급별 추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직급별 자격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직 급	자 격 기 준
4급 (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자격기준 중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기준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서류전형(적격여부 판단) 시험위원이 인정한 사람

- 직급별 추가 자격 요건

직급	추 가 자 격 요 건	
4급	일반직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재활전문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2. 심리치료 관련학과(심리학과, 재활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등) 전공자 중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재활심리) 자격인증서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심리검사(지능검사, 사회성숙도) 및 평가] 경력 1년 이상

3. 임용 조건 및 보수 수준

가. 근무시간, 근무지: 주40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우리복지관(제주시 소재)

나. 보수수준

○ 道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통합) 준용

* 보수 반영을 위한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서류 적부심사 시 결정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 기간제 근로자(4급, 20호봉) 인건비 범위 내

다. 수습기간 적용 (※ 정규직만 해당)

○ 수습기간 6개월 적용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임용 확정

라. 기간제 계약기간: 임용일~2025.06.02.

4. 채용 일정

구 분	일정	비 고
채용공고	2024. 9. 25.(수) ~ 10. 15.(화)	
지원서접수	2024. 10. 7.(월) ~ 10. 15.(화)	
서류전형	2024. 10. 17.(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0. 18.(금)	
면접전형	2024. 10. 23.(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0. 24.(목)	
임용예정일	2024. 11. 1.(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공고 및 지원서 접수

가. 채용 공고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

나.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필수 제출	응시원서	[서식1]
	자기소개서	[서식2]
	직무수행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동의서	[서식4]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 증명서 (자격요건에 따라 해당자 필수 제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경력확인이 안될 경우 미인정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로 발급 제출	주민등록등본 미인정, 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 변동 기재, 개명·병역사항 포함
해당자 제출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가점기준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최종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증명서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3자리 모두 표시) ■ 일반채용신체검사서(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비용환급용) ■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3*4cm)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등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사 결과로 채용신체검사 대체 가능

다. 지원서 접수 방법 :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

구분	주소	비고
전자 우편	jpass@jeju.pass.or.kr	
방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층 (제주시 애조로 1254)	평일(월~금 09:00~18:00)에만 가능(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라.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 정보가림 채용을 위하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 학교 등이 노출 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됨
-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및 임용 취소(최종합격이후 재직 및 경력증명 내역 수정 불가)
- 응시자의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가점 확인 및 자격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 발표 후 상기 증명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음

6. 전형절차 및 심사기준

가. 서류전형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심사방법
 - 채용분야 응시자격 기준 적격 여부 심사, 적격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합격자 통지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나. 면접전형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면접 평정요소

공적책임성 등	이해력·지식수준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인성 및 직업관	창의성 및 전문성	배점
20	20	20	20	20	100

- 합격 배수 : 선발예정 인원 이내

다. 가점 기준(우대사항)

구 분	대 상	우대 요건	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면접 각 항목 40% 이상 득점 시	만점의 5% 또는 10%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면접 만점의 5%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중복 적용 불가)
○ 사회적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①→②→③ 순으로 우대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지

가.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구분	면접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기준
공통 사항	① 공적책무성·우리복지관의 목적성 부합여부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인성 및 직업관 ⑤ 창의성 및 전문성	·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사회적취업취약계층(①→③) - 4순위: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 (①→②→③→④→⑤)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나. 최종 합격자 통지

- 합격자 발표 : `24. 10. 24.(목)
-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다. 임 용

- 임용예정일 : `24. 11. 1.(금) 예정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과 근로계약 체결

8. 예비합격자

가. 예비합격자 제도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나.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순번(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9.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

가.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접수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방법 :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나. 채용서류 반환

-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서명한 후 사회서비스원으로 제출
- 반환방법 : 응시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은 사회서비스원 부담)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나.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정보가림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됩니다.

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바.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가점 확인 및 자격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최종 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 가능하여야 합니다.

차. 임용 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타.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파. 지원자격 요건 심사 및 급여 반영을 위한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서류 적부심사 시 결정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합니다.
- 하.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노무팀(070-4173-86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참고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